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2일, 김태선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가공·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복원 등의 목적으로 방사·이식·양도·양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흡하여 인공증식한 것의 사용 허가 대상에 기존의 수출·수입·반

출 또는 반입 이외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포함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하에 허용하고 있음.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 서식지외 보전기관 간 개체 교환이나 이동 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원칙적 금지 행위에 양도와 양수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리강화를 통한 멸종위기 야

생생물의 실효적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채취등에 대해 ①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법 제14조제1항단서)와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등 원칙적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법 제14조제3항).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항이 분리 규정되어 있어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인공증식’ 개체의 경우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가공·유통 또는 보관’될 수 있는 문제와 ②방사(放飼)·이식(移植)에 대한 허가 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 및 ③양수·양도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14조제1항단서와 동 조 제3항으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제2항으로 병합 신설하면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하는 경우에도 기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나의 항으로 분리·통합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放飼)한 경우 등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 ‘유통’을 명시적으로 삭제하여 인공 증식 개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2항에는 기후부 장관의 허가 외에도 제9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제10호(서식지외보전기관 받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에도 ‘허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함께 정비되는 안 제70조 등의 조항에서 허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용되는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14조제2항은 법 제70조(벌칙)의 구성요건으로도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강화된 명확성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다양한 SNS의 보급으로 멸종위기종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유포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지 대상에 ‘선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광고 이외의 매체로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단서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종의 보호 강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 제70조(벌칙)는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경우 선전 ‘등’으로 조항을 개정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상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광고·선전을 금지한 유사입법례로는 「동물보호법」,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 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